
통 신 설 비 시 방 서

(공사명 : 성북소방서 돈암파출소 재건축 공사)

2007. 1.

(주) 씨티 건축사 사무소

(주) 경진이티씨엔지니어링

--- 목 차 ---

제 1 장 : 총 칙

제 2 장 : 약전 설비 공사

제 1 장 : 총 칙

1. 적용범위
2. 법규의 적용
3. 전기 통신 공사 감독원
4. 전기 통신 공사 기술자
5. 공정표 및 시공 계획서
6. 기기 및 재료
7. 시공의 입회
8. 관공서 기타의 수속
9. 공사 현장 관리
10. 공사 보고
11. 종말 처리 및 준공도 작성
12. 기타 사항

1. 적용 범위

본 특기 지방서는 성북소방서 돈암파출소 재건축 공사중 통신 공사에 적용한다.

2. 법규의 적용

1) 본 공사는 대한민국 제반법령중 다음에 열거한 법령에 위배됨이 없이 시공하여야 한다.

가. 전기 설비 기술기준령에 및 K.S 규정

나. 전기 설비 내,외선 규정 및 배전규정

다. 건축법 및 이와 부속법령

라. 구내 통신 설비 설치 규정

마. 감독원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기타 법규

2) 본 공사에 대한 지방서가 1) 항 각호에 열거한 법령과 상이한 부분이 있을 경우에는 관계법령이 우선하며, 만약 공사기간중 관계법령이 개정될 경우에는 개정되는 법령에 따라야 한다.

3. 전기 통신 공사 감독원

감독원은 건축주측의 관계감독자 및 건축주측에서 의뢰한 감독원 및 감리자를 말한다.

4. 전기 통신 공사 기술자

1) 전기 통신 공사업법이 규정하는 공사기사를 공사장에 상주 시키고 감독원의 지시에 따라 감독업무와 안전관리 보안책임을 감독하여야 한다.

2) 전기 통신 공사의 시공은 감독원이 인정하는 유능한 기능 보유자로 하여금 시공하게 한다.

5. 공정표 및 시공 계획서

공정표 및 시공 계획서는 건축공사 공정표를 참조하여 작성 제출하고 감독원의 승인을 받아야 한다.

6. 기기 및 재료

- 1) 본 공사에 사용하는 자재는 신품이어야 한다.
- 2) 본 공사에 사용하는 자재는 K.S 표시품을 사용하여야 하며, K.S 표시품이 없는 자재는 국내에서 시판되는 자재중 최우량의 질을 사용하되 감독원의 승인을 얻어야 한다.
- 3) 본 공사에 이용하는 자재중 감독원이 별도로 지정하여 시험소의 시험을 요구하는 것에 대하여서는 시험소에서 합격된 것을 사용하여야 한다.
- 4) 본 공사의 제작사양 및 시공도를 작성하여 제출하고 감독원의 승인을 받아야 하며, 제작 및 시공상 필요한 견본을 현장 반입전에 제출하여 승인을 받은 후 사용하여야 한다.
- 5) 견본 제품이 곤란한 품목에 대하여서는 카다록 또는 사양서를 제출하여 승인을 득한 후 사용하여야 한다.
- 6) 감독원이 요구하는 자재 견본은 시공자 부담으로 지체없이 제출하여야 한다.

7. 시공의 입회

- 1) 시공후 검사가 불가능한 것 또는 감독원이 지적하는 공사는 감독원의 입회하에 시공하여야 한다.
- 2) 콘크리트 슬라브에 매입배관을 할때는 배관이 끝나고 감독관의 검사를 받은 다음 콘크리트를 타설하도록 한다.
- 3) 접지공사를 시행할 때는 반드시 감독원이 입회한 가운데 시행하고 접지 저항치를 측정하여 승인을 득하여야 한다.

8. 관공서, 기타의 수속

전기 통신 관계법령에 규정된 공사 시공에 필요한 관공서 및 기타 기관의 수속 일체는 본 공사 시공자가 하며, 수속 도중에 진행사항을 감독관에게 수시로 보고 하고 각 시험 및 검사에 합격하여 공사준공과 동시에 즉시 사용할수 있게 하여야 한다. 관공서 및 기타 기관의 수속에 드는 비용은 시공자 부담으로 한다.

9. 공사현장 관리

- 1) 본 공사 시공자는 관계 법규를 준수하고 종업원, 기타의 출입감독 및 화재, 도난, 기타 사고 방지와 시공상 안전관리에 철저를 기하여야 한다.
- 2) 본 공사 시공자는 재해 및 제반사고 예방에 최선을 다하고 시공중 발생하는 재해 및 인명 피해등 모든 사고에 대한 책임을 전적으로 지며, 타 공사에 피해를 끼쳤을 경우 감독원이 지정하는 기일내에 이의 없이 변상 또는 보상하여야 한다.

10. 공사 보고 (작업일지)

공사의 진도, 종업원의 취업상황, 기자재의 검사 상황등 공사진행에 필요한 사항을 명기한 보고서를 매일 감독원에게 제출하여 승인을 얻어야 한다.

11. 종말처리 및 준공도 작성

- 1) 공사완료후 건축물 내외의 청소 및 기재 종말처리를 완전히 한다.
- 2) 본 공사 시공자는 설계변경 및 시공 변경등 공사 내용을 정확히 기록하여 보수 관리가 편리하도록 준공도를 작성하여 원도 및 청사진 3부를 제출하여야 한다.

12. 기타 사항

- 1) 본 공사 중에 건축 변경 또는 해당법규 변경으로 인하여 전기 공사를 불가피 변경 시공하여야 할 경우에는 변경 설계도서를 작성하여 감독원의 승인을 받은 후 시공하도록 한다.
- 2) 본 공사 시공자는 공정별로 중요 공사 부분의 사진 촬영을 하여야 하며, 사진 촬영기준은 건축 특기시방서에 준한다.
- 3) 시공자는 본 건물에 준공시 보수 관리를 위하여 약 3개월간 기술진을 상주시켜 건축주 운용자에게 교육시켜야 한다.
- 4) 시공자는 본 건물에 시설되는 통신 설비의 중요 기기에 대하여 기기 납품자는 예비품 명세서 및 보수 지침서 와 운전지침서를 각 1부씩 제출하여야 한다.
- 5) 본 공사에 시공하는 모든 자재는 사용 15일 전에 현장에 반입하여 감독원의 검사를 받아야 한다.

제 2 장 : 약전 설비 공사

1. 전화 설비 공사

2. T.V 공시청 설비 공사

3. 방송 설비 공사

1. 전화설비공사

- 1) 전화설비공사는 체신부 제정 구내 통신설비 설치규정에 위배됨이 없도록 시공되어야 한다.
- 2) 단자함은 체신부 규격에 준하고 제작도를 작성하여 감독관의 승인을 받은 후 제작에 착수하여야 한다.
- 3) 전화 케이블 배선중 1루트 도중에서 CABLE 접속을 금하며 케이블 접속은 반드시 단자함 내에서 단자로서 처리 하여야 한다.
- 4) 단자함에서 각 아웃렛까지의 배선은 UPT CAT#5 0.5mm.4P 사용하고 각 단자반 간 및 국선 단자반 까지의 배선은 UPT CAT#5 케이블 을 사용한다.
- 5) 전화용 아웃렛트는 4각심형을 사용하고 소정의 카바를 필히 사용하여야 한다
- 6) 전화용 콘센트는 체신부 규격 제품을 사용한다.(8PIN 모듈러잭)
- 7) 전화기 및 설치공사는 본 공사에서 제외한다.
- 8) 국선 단자반 에는 국선용량의 피뢰탄기 설비를 하고, 접지는 1중 접지를 하여야 한다.

2. T.V 공시청 설비 공사

- 1) T.V 공시청설비의 시공자는 시공하기전 공청지역의 수신전계 강도를 측정하여 최종 말단까지의 전계손실을 계산하고 단말유니트에서 전계강도 70dB 이상을 확보 하여야 한다.
- 2) T.V 공청용 기기는 설치하기전에 감독관에게 견본을 제시하여 특성을 확인한후 승인을 득하여 사용한다.
- 3) 동축케이블 배선도중 분배기, 분기기 직렬유니트등의 아웃렛트에 접속 되기전에 중간배선 과정에서의 접속을 금한다.

- 4) 안테나는 스테인레스 재료로 제작하여야 하며, 소자 표면은 미리 섬세하게 표면처리되어야 한다.
- 5) 안테나 조립에 사용되는 금구 및 볼트, 너트 종류는 부식을 충분히 방지할수 있도록 도금등의 처리를 하여야 한다.
- 6) 안테나는 U.H.F , V.H.F 대역을 모두 수신할수 있는 구조의 것이어야 한다.
- 7) T.V 직렬유니트, 아웃렛트는 4각심형 박스로서 소정의 카바를 필히 사용하여야 한다.

3. 방송 설비 공사

- 1) 본 공사에 사용하는 전선관은 특기 없는한 HI PVC 전선관(KS품)을 사용한다.
- 2) 스피커 회로에 사용하는 전선은 특기 없는 한 H.I.V 전선을 사용 한다.
- 3) AMP 및 스피커등은 규격, 특성, 외양등을 제작하기전에 제작도를 제출하여 감독관의 승인을 받아 제작에 착수 하여야 한다.
- 4) 본 공사에 사용하는 모든 스피커는 특기없는한 설계도에 준하는 용량의 것을 사용한다.
- 5) 모든 스피커에는 MATCHING TRANS 를 내장하고 입력단자는 HIGH IMPEDANCE 로 MATCHING 되어야 한다.
- 6) 구내 일반 방송은 부분별,층별 및 전체방송이 되어져야 한다.
- 7) 자체방송, 소방서방송, 방제지령방송으로 구분하여 회로를 구성한다.